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지방과 소관사무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14호는 제10호로 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축산과 소관사무 제55호 다음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축산과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li> <li>나. 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 및 위반자 조치</li> <li>다. 오염원 조사 및 조치</li> <li>라. 오염사고 발생시 환경오염도 조사</li> <li>마. 수산자원보전사업 실시</li> <li>바. 표지판 설치</li> <li>사. 관리부 비치 및 보고</li> <li>아. 현지 지도 감독</li> </ul> </li> </ul>	국토이용관리법 동법제14조의2, 제26조 동법제15조제1항 제5호, 제17조  수자원보전지구관리 요령제6조 동관리요령제7조 제3항 동관리요령제8조  동관리요령제9조  동관리요령제10조  동관리요령제12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 제8호 다음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시개발과	9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10	○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인가	동법제76조의2제2항
	11	○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재개발법제9, 10, 11조
	12	○ 재개발사업시행의 지도감독	도시개발법제6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